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

보건복지부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11. 25.(수)

위급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동의절차 개선으로 더 신속하게 진료 가능

- 11월 25일 「응급의료법 시행규칙」 개정·공포 -

-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·동의 절차, 응급구조사의 배치 규정 개선 등 -

앞으로 응급의료종사자는 **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**를 **동의 절차** 때문에 기다리게 하지 않고 **적극적으로 진료**할 수 있게 된다. **보호자가 없거나 동의를 거부**하더라도 진료가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 다른 **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**를 받아 응급처치·진료 등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.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11월 25일(수)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**응급의료에 관한 설명·동의 절차**, **응급구조사의 배치**와 **응급의료종사자의 보호 규정**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**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개정·공포하였다고 밝혔다.**

시행규칙 개정령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흐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등 **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**에게 **법정 대리인**이 **없거나** 응급의료에 **동의하지 않는 경우**에도, 응급의료가 늦어져 환자의 **생명이 위험**해지거나 **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장애**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자신 외의 **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**를 받아 **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** 한다. (제3조)

기존 시행규칙은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'**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한**' 경우만 규정하고 있었다. 때문에 **환자가 보호자 없이 이송**될 시, 보호자를 찾기 전까지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지 못하고, 구급대·경찰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. 이번 개정을 통해 **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**에서 **응급의료종사자가 따를 기준이 분명**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둘째,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폭행 등 **응급의료 방해 행위**로 **피해**를 입은 **응급의료종사자**를 가해자와 **분리하고**, 추가 **피해 방지** 조치, **치료 및 상담** 지원, **고소**에 필요한 **행정·절차 지원**, 고소·고발·손해배상청구 등에 필요한 **증거물·증거서류 제출**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. 피해를 입은 **응급의료종사자**의 **회복**과 **법적 대응**을 돕고, **다른 응급환자**에게 피해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. (제5조의2)

셋째, 구급차 등이 **환자**를 이송하거나 이송하려고 출동할 때 **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**이 항상 타도록 한다. 지금까지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만 이 기준이 적용됐으나, **이송 중에 환자 상태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대비**하려는 것이다. 다만, 의사나 간호사가 탄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타지 않을 수 있다. (제39조)

이번 개정령은 **공포한 날부터 시행**하되, **응급구조사 탑승 기준**(제39조)은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**공포 후 6개월**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.

또한, 11월 25일(수) **구급차 환자실 길이 기준 확대**(250㎝ → 290㎝), **응급환자이송업체의 주·야간 구급차 운용 기준*,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·응급구조사 각 2명 확보 등을 내용**으로 하는 「**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**」도 **개정·공포**되었다.

* (주간)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전체, (야간)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5대당 1대

다만, 구급차 환자실 길이 기준 확대는 운용 주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. 우선 국가 및 지방정부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2027년 4월 2일부

터, 의료기관 및 응급환자이송업체 등 그 외 운용자의 구급차는 2030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량부터 적용된다.

한편, **응급환자이송업체의 주·야간 구급차 운용 기준과 새로운 인력 기준**은 법령 **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**된다.

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"기존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"라며, "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해 더욱 신속한 진료가 가능해지길 기대한다"라고 밝혔다.

<별첨>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

담당 부서 <총괄>	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	책임자	과 장	송영진 (044-202-25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정현 (044-202-2563)
<구급차>	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성원 (044-202-2520)
		담당자	사무관	송진성 (044-202-252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